

## ■ 전임교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 (명예퇴직의 요건)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u>최근 3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으로</u>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  <신 설>	제2조 (명예퇴직의 요건)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u>본인이</u>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  2. <u>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원으로</u> 총장이 제안하는 명예퇴직에 <u>본인이 동의하는 교원</u>  3. 본교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교원의 인원조정이 필요하여 총장이 제안하는 명예퇴직에 본인이 동의하는 교원  ② 전항에 불구하고 매 학기 명예퇴직 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교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교원  3.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복무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교원 4.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교원
제3조 (명예퇴직수당 산정) ① 명예퇴직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자의 퇴직 당해년도 <u>기초연봉의 1/12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u>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산정) ① 명예퇴직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자의 퇴직 당해년도 <u>기초연봉의 1/12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1/2로</u>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u>기초연봉이라 함은 본교 보수규정 제4조(교원보수)를 기준으로 한다.</u>  ③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u>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복무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교원의 경우 연구년기간에</u> 지급된 보수 중에서 요구 재직기간과 비교하여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u>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는 기간만큼의 보수를 교무처장이 지정한 날까지 본교로 반환하여야 한다.</u></p>
제4조 (명예퇴직의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예정일 <u>120일</u>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제4조 (명예퇴직의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예정일 <u>60일</u>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학법대우 제16-184호 : 2016.6.27)</u></p> <p style="text-align: center;"><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